

★ ◎

본부장 방침 제435호

문서번호	재정전략팀-2550
보존기간	영구
결재일자	2015.12.03
공개여부	공개
일상감사	대상

팀 원	재정전략팀장	전략기획처장	기획경영본부장			
송호윤	김영준	황상하	김우진	12/03		
협 조	팀 원	성민중	파트장	이태중	예산자금팀장	조한보

	No.	감사	의견
일상 감사			

경영계획 및 심사분석규정 개정(안)

서울특별시 SH공사

(기획경영본부 재정전략팀)

경영계획 및 심사분석규정 개정(안)

I 관련근거

- 「공사 사규관리규정」 제2장 제정 및 개폐 절차 제6조(입안)
- 사업관리 개선 시행(안) - 사장방침 제846호 (2015.10.12.)
-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(맥킨지-삼일 회계법인 컨소시엄) 권고사항
 - 단위 사업별 공정 및 수지 관리 기능을 통해 재무성과 제고
 -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통한 리스크 관련 자문기구 운영

II 개정이유

- 사업관리를 통해 개발계획부터 공급까지 추진일정을 통합 관리
- 리스크 관리를 통해 선제적 리스크 차단 및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
- 사업의 시작과 진행과정에서 사업수지 및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측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차단하여 재무성과 제고 및 계속 기업으로 성장 기반 마련

III 개정내용

- 사업관리에 대한 사항 신설
 - 사업관리 : 기존 **심사분석**에 **단위사업관리**와 **리스크관리**를 추가
[사업관리=심사분석+단위사업관리(Project Management)+리스크관리(Risk Management)]
 - 심사분석 : 사업부서의 공정률을 계량지표로 관리하고 비사업부서(총무, 인사부서 등)의 업무는 비계량지표로 관리 [기존제도와 변동 없음]
 - 단위사업관리(Project Management) : 프로젝트별 개발계획부터 공급까지 전체 추진일정을 공정관리와 수지관리를 일원화하여 사업별 재무목표로 설정 관리
 - ※ 비사업부서의 업무는 관리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심사분석에서 관리

- 리스크관리(Risk Management) : 개발계획부터 공급까지 예측/식별 가능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식별된 리스크를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(실무)위원회 등을 통해 자문을 수행

○ 주요개정 내용

- 경영계획 및 심사분석 규정 → 경영계획 및 사업관리 규정
 - 심사분석을 포괄하는 개념인 사업관리로 규정 명칭 변경
- 제2조(정의), 제3조(기능), 제4조(기준)에 단위사업관리, 리스크관리 내용 신설
- 제4장 단위사업관리 신설 세부 내용 규정 : 제18조~제20조
- 제5장 리스크관리 신설 세부 내용 규정 : 제21조~제26조

※ 세부사항 붙임2 참조

IV 기타사항

- 예산자금팀 : 외부위원 회의 참석 수당 등
- 법 무 팀 : 경영계획 및 심사분석규정 개정 의뢰 요청

- 붙임 1. 610경영계획및심사분석규정(개정2015.11.24)제안요지
2. 610경영계획및심사분석규정(개정2015.11.24)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
3. 610경영계획및심사분석규정(개정2015.11.24)개정안. 끝.